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169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권상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경춘, 이상훈

피고, 피항소인 C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방호, 한정이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9. 9.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가합10250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원고 A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원고 A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으로,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이하의 ”원고 관리단“을 ”제1심 공동원고 관리단“으로, 제1심판결 제4면 이하의 ”원고들“을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관리단“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이 사건 발전기금의 분배에 관하여 별도로 명확한 약정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각 권리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발전기금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에게는 피고가 받은 발전기금 중 6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였다). 】

○ 제1심판결 제8면 하단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⑧ 나아가 원고는 적어도 피고와 균등한 비율로 이 사건 발전기금을 취득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발전기금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E상가의 시설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업체에 불과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2020. 2. 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는 제1심 공동원고 관리단이고, 원고의 명의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제1심 공동원고 관리단에게 최종

귀속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제1심 공동원고 관리단의 대리인 내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주체라고 주장하였던 점(다만, 원고가 제1심 공동원고 관리단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주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㉔ 한편 제1심 공동원고 관리단은 2021. 6.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발전기금이 피고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원고의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 업무 종료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한 점(을 제2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공동원고 관리단과 별개로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독자적으로 수령할 실질적인 권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김길량, 판사 김용민

1)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는 2020. 10. 12. 원고를 주위적 원고, 제1심 공동원고 A 관리단(2021. 7. 27. 항소취하간주되었다)을 예비적 원고로 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위 대리인이 제1심 공동원고 A 관리단의 적법한 위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되었고, 이후 위 관리단의 추인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관리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